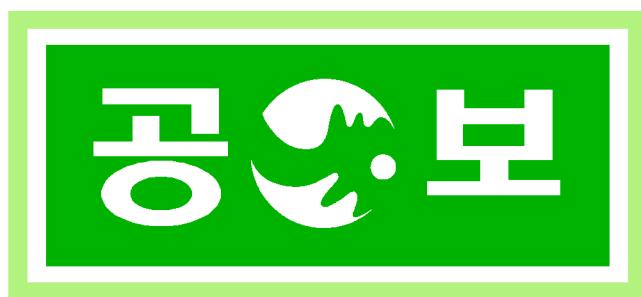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기 관 의 장
람	



제 952 호 2015. 6. 15. (월)

## 훈령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훈령 제21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규정 폐지 규정] ..... 2

## 고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01호[하천점용허가 고시] .....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02호[도로명주소 고시] .....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03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6

## 공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537호[문화예술회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계획] .....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557호[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1

안내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회람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6 행정712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이우선



2015년 6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훈령 제2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규정 폐지 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101호

##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하천의 명칭

천곡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대한 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대표 김경자
-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 3. 점용 목적 및 개요

행선지(목적지)위치안내 표지판 설치

###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천곡동 555-5번지
- 나. 면적 : 1m<sup>2</sup>

###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15. 6. 15.~2019.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102 호

##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차일3길 30-22(창평동)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6.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충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청평동 606-4	울산광역시 북구 차일3길 30-2(청평동)	기존자연마을인차일마을에 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2	울산광역시 북구 마곡동 795-5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1(마곡동)	매곡동의지명을반영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1-03-22
3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997-21	울산광역시 북구 산내4길 40(염포동)	예로부터신해자내려오고현재도사용중인마을이름으로누구나쉽게알수있는이름으로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1-05
4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35-1, 625-5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569(양정동)	염포현기행지를연결하는도로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1-03-22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현촌지구 78-3-41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3길 28(진정동)	옛자명이마흔재도사용하는이름으로울산시민이면누구나친숙한이름으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462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2로 52(호계동)	호수지구를지나는도로라는의미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3-12-30
7	울산광역시 북구 일천동 321-1	울산광역시 북구 농공단지1길 11-5(일천동)	달천농공단지내에위치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8-09
8	울산광역시 북구 화평동 1446-7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32-20(화평동)	지연부락명칭을사용해서도로명부여하였다.	2010-04-27
9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현촌지구 88-7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4길 16(진정동)	옛자명이마흔재도사용하는이름으로울산시민이면누구나친숙한이름으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1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52-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9길 4(호계동)	오계사강에위치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2009-08-20
11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현촌지구 528-151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17길 29(진정동)	옛자명이마흔재도사용하는이름으로울산시민이면누구나친숙한이름으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12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884-2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입5길 30(마곡동)	기존마을사업단지도로명과연계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103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4길 7-1(중산동)외 8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6. 15.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시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4길 7-1(중산동)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43-4	2015-06-15	건축물 별설	
2	울산광역시 북구 농공단지1길 31-5(달천동)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321-1	2015-06-15	건축물 별설	
3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479(정자동)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86-2	2015-06-15	건축물 별설	
4	울산광역시 북구 엠포로 290(효문동)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18-4, 619-1	2015-06-15	건축물 별설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0길 1(진장동)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8-1B 5L	2015-06-15	건축물 별설	
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0길 10(진장동)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6B 4L	2015-06-15	건축물 별설	
7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4-2(매곡동)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42-29	2015-06-15	건축물 별설	
8	울산광역시 북구 달곡1길 52(무릉동)	울산광역시 북구 무릉동 351-1	2015-06-15	건축물 별설	
9	울산광역시 북구 양지길 33-1(상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779-2	2015-06-15	건축물 별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 - 537호

## 문화예술회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5년 6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모집인원

근무지	인원(성별)	업무	근무기간
북구 문화예술회관	1명(여)	놀이방 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민원 안내	2015. 7. 15. ~ 2015. 12. 31.

### 2. 모집방법

- 가. 서류접수 : 2015. 6. 9. ~ 6. 19.
- 나. 서류심사 : 2015. 6. 22.(월)
- 다. 면 접 : 2015. 6. 24.(수) 10:00(예정) 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한

### 3. 응시자격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4. 모집일정

#### 가. 접수일정

- 1) 기 간 : 2015. 6. 9.(화) ~ 6. 19.(금), 평일 09:00~18:00
- 2) 장 소 : 북구문화예술회관 1층 사무실
- 3) 접수방법 : 개별신청(우편접수 불가)

**나. 시험일정**

- 1) 서류심사 : 2015. 6. 22.(월)[합격자 개별 통지]
- 2) 면접시험 : 2015. 6. 24.(수) 10:00 예정, 북구문화예술회관 1층 다목적실

**5.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6. 26.(금) 개별 유선 통지**

※ 최종합격자 근무 포기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6. 제출서류**

- 가. 신청서 1부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라.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주 40시간

나. 보수

- 1) 기본급(일당) : 44,640원
- 2) 수당 : 가족수당, 주차수당, 연차수당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근무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재직한 자는  
재직 기간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11개월이상 근무 불가)

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문화예술회관, ☎ 241-7352, 7353)

## 【붙임 1】

## 기간제 근로자 신청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5 - 557호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기능 강화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한 표준안 시달로 개정 필요

### 2. 주요내용

- 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책무 규정(안 제7조 ~ 제8조)
- 나.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와 회원 규정(안 제13조 ~ 제15조)
- 다.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규정(안 제16조 ~ 제18조)
- 라.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규정(안 제27조)

### 3. 근거법규

-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52-241-7671, 팩스번호 : 052-241-7669

**6. 기타사항**

개정하고자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입)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범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 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아동·여성 보호 업무 담당국장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5. 청소년상담지원시설
  6.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7.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8.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9.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10. 지역주민대표
  11. 학계전문가
  12.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 제3호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은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 4.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제14조(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실무사례협의회 회원)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여성 보호 및 복지담당, 팀장, 간사 또는 전문가를 실무사례협의회원으로 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사례협의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7조(안전망의 구축)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제18조(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아동·여성 긴급개입 구조
2.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제19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 제4장 회의운영

제20조(운영위원회 정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2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실무사례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제23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회의기록과 보고)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는 사례협의회장이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한다.

③ 실무사례협의회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⑤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 제5장 행정사항

제2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7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구청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